

국립공원의 保存과 開發

保存에 重点둔 合理的인

利用調和를 併行해야



李 高 奉

(국립공원관리공단시설 부장)

국립공원의 제도는 미국에서 훌륭한 경관을 개인이 분할하여 자본화 하기보다는 전국민이 영원히 향유될 수 있도록 국가의 소유로 확보하자는 혁명적인 취지로 발달하여 1872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옐로우스톤이 지정되었다.

그후 유럽은 국립공원제도가 생겨나기 전부터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연보호지구로 설정하였으며, 동양권은 자연보호 이념이 뒤늦게 도입되어 1934년 최초의 국립공원을 지정하였고 한국은 1940년 초반에 금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조사가 있었으나 그후 해방이 되어 1967년 지리산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는 20개(육상 17개소, 해상 3개소)로서 전국토의 3.79%(海上제외)에 이르고 있다.

국립공원 제도는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보호와 이용에 있다.

즉, 뛰어난 경치를 이루는 자연을 보호하면서 국민의 휴양지로서 현실적인 감각과 미래지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 개발,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 풍경지로서 전국민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면서 잘 보존하여 자손만대 후손에 물려줄 금수강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현존의 임무요 당면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 그대로 절대 보존할 것인가 적정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보존에 치우치다 보면 도시화 및 고도산업 사회화와 더불어 마이카 시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레저욕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또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지금의 우리 현실은 빵에 우선하지 않고 신선한 공기와 물이 있는 휴식공간을 그리워하고 있다.

우리 모든 국민은 신선한 공기와 물, 자연의 풍치를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충족을 위하여는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보존에 중점을 두면서 합리적인 이용을 꾀할 수 있도록 지나치지 않는 개발이 조화롭게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망의 정비와 더불어 주차장, 야영장 등의 공공투자와 함께 각 공원의 특성에 알맞는 휴게시설과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편의시설을 국민생활감각에 알맞게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휴양지로서 이용을 도모하면서 나머지 절대면적을 적극적으로 보존하여 자손만대에 길이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지상의 과제가 아닌가 여겨진다.